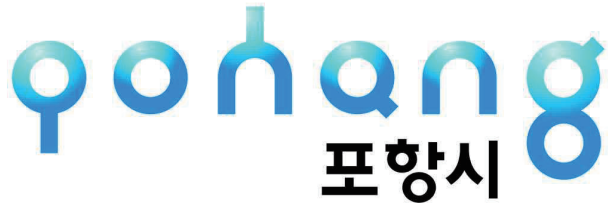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포항시보

제1097호 2016. 6. 7(화)

◀ 예 규 ▶

- 포항시 지방공무원 특별승진제 운영 지침(제7호) 2

◀ 입법예고 ▶

- 포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제2016-35호) 8

◀ 고 시 ▶

- 포항 장성침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제2016-58호) 25

◀ 공 고 ▶

-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제2016-776호) 27
 ○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제2016-801호) 38
 ○ 제230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 공고(포항시의회 제5호) 41

회 람								
--------	--	--	--	--	--	--	--	--

예 규

포항시 지방공무원 특별승진제 운영 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포 항 시 장 이 강 덕

2016년 6월 7일

포항시 예규 제7호

포항시 지방공무원 특별승진제 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사회에 더 열심히 일하는 근무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에 따라 포항시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에 따른 특별승진 대상자는 포항시 소속 4급 이하 일반직 및 연구·지도직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자격 요건) ① 특별승진 대상자는 평소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열심히 근무함으로써 모든 공무원의 귀감이 되고, 탁월한 직무수행능력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하여 구체적이고 뚜렷한 공적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포상(청백봉사상, 민원봉사대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2. 지방행정의 달인, 대한민국 공무원상 등 행정자치부 또는 인사혁신처에서 선정하는 우수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공무원
3.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4. 국정과제 또는 강소기업 육성, 기업(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방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5.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가 급증한 업무를 적극적·능동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6.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7.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4조(추천기준) ① 각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별승진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제3조의 기준에 적합한 유공이 있는 사람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 대상자로 추천될 수 있는 사람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1년 단축가능) 이상 해당 직급에 재직한 사람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제5조(추천서류) ① 각 부서의 장은 특별승진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국·소·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인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특별승진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2. 공적조서(별지 제2호 서식)
3. 그 밖에 공적사실을 뒷받침할 증빙서류

제6조(공적조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승진 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의 공적사실을 감사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대상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공적심사 등) ① 특별승진 후보자에 대한 공적·직무능력 등에 대한 심사의 객관성·공정성 유지를 위하여 포항시특별승진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포항시 포상 조례」 제12조의2를 준용한다.

③ 심사위원회가 특별승진 대상자에 대한 공적사항 등을 심사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추천서류 및 제6조에 따른 공적조사 등을 참고하여 엄정하게 심사·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대상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심사·평가한 결과 특별승진 대상자로 적합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한다.

제8조(인사위원회 심의) ① 시장은 제7조제4항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받은 후 포항시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적격 여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특별승진 대상자에 대하여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별승진요건 해당여부와 추천 공적의 중요성·타당성·적정성 등의 적격여부를 심의·의결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특별승진임용) ① 임용권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 대상자를 통보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승진임용 하여야 한다. 다만, 6급 공무원인 인사위원회의 승진 의결 대상자가 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특별승진 추천서

대 상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담당 업무
공무원					
추천 공적 요약	※ 기재내용 : 특별승진 요건에 해당하는 업무실적과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요약 기재				
업 무 실 적 확 인 가능처	기관단체명 (단체명)	주 소			연 락 처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폰 등
제 출 서 류	1. 공적조서 1부 2. 그 밖에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위와 같이 특별승진 대상공무원을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포항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공 적 조 서

대 상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비 고
공무원					
공 적 사 항					

1. 제정이유

- 공직사회에 더 열심히 일하는 근무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에 따라 포항시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적용대상) 포항시 소속 4급 이하 일반직 및 연구·지도직공무원
(안 제2조)
- 나. (특별승진 자격요건) 탁월한 직무수행능력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하여 구체적이고 뚜렷한 공적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람(안 제3조)
- 다. (특별승진 절차) 공적사실 조사, 특별승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특별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9조)

입 법 예 고

포항시 공고 제2016-35호

공 고

「포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1. 자치법규명**

- 포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2. 개정이유

-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2조제7호 및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포항시로부터 “유망 강소기업” 또는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3년간 포항시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함.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3. 주요내용

- 포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2조의3 규정에 따른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대상 범위에 「포항시 강소기업육성 및 지원조례」에 따라 “유망 강소기업” 또는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포항시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하는 내용 추가 신설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 및 알기쉬운 용어로 자구수정.

3. 관계법령

-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2조제7호 및 제20조제1항제4호 (2016년 3월 29일 일부개정)

4. 규칙안 : 붙임

5. 예고기간 : 2016. 5. 31. ~ 2016. 6. 21.(22일간)

6. 의견제출

이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6. 21.(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재정관리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문의 및 의견제출 : 포항시 재정관리과(포항시 남구 시청로1, 37683)

전화 054)270-2494, FAX 054)270-2490, E-mail bell69@korea.kr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견	비고

포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포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 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단서 중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을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조사하는것”을 “조사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조사를말한다”를 “조사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전자적형태”를 “전자적 형태”로, “신고하는것”을 “신고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신의에”를 “신의를”으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증빙자료등”을 “증빙자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4조 중 “사실중”을 “사실 중”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를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당해 관할지역내”를 “해당 관할지역 내”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인자하는”을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개시전 또는 조사진행중”을 “개시 전 또는 조사 진행 중”으로, “장에게협조”를 “장에게 협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간내”를 “기간 내”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다른규정등과의 관계)”를 “(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중 “업무지침등”을 “업무지침 등”으로 한다.

제10조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안 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경우에 한하여”를 “경우에만”으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제2호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같은 항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유망 강소기업 또는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제12조의3제1항제4호(중전의 제3호) 중 “「중소기업기본법」”을 “「중소기업 기본법」”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건설업 법인”을 “건설업법인”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납기전”을 “납기 전”으로 한다.

제15조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6조 중 “당해 납세의무자의 일과시간내”를 “해당 납세의무자의 일과시간내”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10일전”을 “10일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천재.지변”을 “천재지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질병.장기출장”을 “질병, 장기출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장부.증빙서류”를 “장부, 증빙서류”로 한다.

제17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을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넣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7일이내”를 “7일 이내”로 한다.

제18조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9조 중 “기한내에”를 “기한까지”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지”를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르지”로, “포함한다)시”를 “포함한다) 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부.서류”를 “장부, 서류”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24조 중 “조사기간.조사범위.조사방법.조사장소”를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방법, 조사장소”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7호”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9호”로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조사보고을”을 “조사보고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준비조사시”를 “준비조사 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지 를”을 “소지를”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일내”를 시일 내“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납기전”을 “납기 전”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지체없이”을 “지체 없이”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발생되는”을 “발생하는”으로, “회수 하고”를 “회수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 기본법」 제136조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무조사가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을 목적을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세기본」----- ----- ----- ----- ----- -----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 <u>각 호</u> -----.
1. "세무조사"라 함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6조에 따른 질문. 검사권에 의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에 물건을 검사·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범칙사건 조사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 ----- ----- ----- ----- ----- ---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일반조사"라 함은 특정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여부, 과세표준액 및 세율적용의 적정여부를 조사하는것을 말한다.	3. ----- ----- ----- ----- ----- 조사하는 것-----.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직접조사"라 함은 납세의무자의 사무실,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에 출장하여 직접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관련인을 상대로 실시	5. ----- ----- ----- 해당 ----- -----

하는 조사를 말한다.

6. (생 략)

7. "전자신고"라 함은 조사대상 납세의무자가 제출할 서류를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전자적형태로 작성한 후 전자서명 및 암호화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신고하는것을 말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여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이를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생 략)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상급관리자를 포함한다)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중 일반적으로 공표되지 아니하거나, 공표

--- 조사를 말한다.

6. (현행과 같음)

7. -----

----- 전자적 형태 -----

--- 신고하는 것 -----.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
----- 각 호 -----
-----.

1. -----

신의를 -----

- 아니 된다.

2. -----

----- 증빙자료 등 -----

-----.

3. -----

----- 범위에서 -----
-----.

4. (현행과 같음)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

----- 사실 중 -----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이 될 사항에 대하여는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시장은 당해 관할지역내에서 지방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모든 과세 객체를 대상으로 수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① 납세의무자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사업장(지정, 제조장, 직매장, 하치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시장은 조사 개시 전 또는 조사진행중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간내에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규정등과의 관계) 이 규칙은 세무조사에 관한 다른 규정이나 업무지침등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0조(납세의무자의 신고준중) 조사 대상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선정하여야 한

----- 해당 -----

-----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 -----
----- 아니 된다.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해당
관할지역 내-----

----- 인정
하는 -----
-----.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① -----

-- 개시 전 또는 조사 진행 중-----

----- 장에게 협조-----
-----.

② -----

기간 내-----
-----.

제7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

업무지침 등-----.

제10조(납세의무자의 신고준중)-----

-----범위-----

다.

제11조(일반조사대상자) ① 일반조사 대상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세원종합관리 상황과 서면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규칙이 정하는 원칙의 범위안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중복조사 방지, 신고납부 풍토조성, 경제·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12조(특별조사대상자)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의3(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면제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한다.

1. (생 략)

2. 포항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신 설〉

--.

제11조(일반조사대상자) ① -----

-----해당-----

----- 범위-----

-.
② -----

----- 범위에서 -----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특별조사대상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

----- 경우에만 -----

-----.

제12조의3(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① -----

-----.

1. (현행과 같음)

2. ----- 따라 -----

3.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유망 강소기업 또는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상공인(취득가액 3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와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 또는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중복조사금지) ① 같은 납세자에 대한 일반조사는 연 2회 이상 조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객관적으로 명백한 세금탈루혐의가 있거나 납기전 징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제15조(조사장소의 한정) 세무조사는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당해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조사시간의 제한) 납세의무자 또는 그 관련인을 상대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일과시간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4. 「중소기업 기본법」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② 제1항에도 -----

----- 건설업법인 -----

제1항에 따른 -----
-----.

제13조(중복조사금지) ① -----

-----.
----- 해당 -----

납기 전 -----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조사장소의 한정) -----

-----.
----- 해당 -----

-----.

제16조(조사시간의 제한) -----

- 해당 납세의무자의 일과시간 내 -
-----.

제17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등) ①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
개시 10일전에 조사를 받을 납세자
에게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2조제
1항 각 호에 규정한 사항을 통지하
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 곤란한 때에는 시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및 화재 기타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에 응하
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권한이 있는 기관에 장부·증빙서
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④ 시장은 제3항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연기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기간) 시장이 세무조사를

제17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등) ① -

--10일 전--

② 제1항에 따른

- ## 1. 천재지변

③ 제2항에 따라

----- 각 호
의 사항을 적어 넣은 -----

1. ~ 4. (현행과 같음)

④ ----- 따름

--- 7일 이내

제18조(조사기간)

실시함에 있어 미리 조사대상자별로 조사기간을 정하여 조사를 개시하
되, 조사기간은 최소한의 범위안
에서 하여야 한다.

제19조(조사기간 연장의 제한) 세무조
사를 개시한 후 기한내에 조사 목적
을 달성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시장은 당초의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수색, 영치의 금지) ① 세무조
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조세범 처벌
절차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 세
무조사(특별조사를 포함한다)시에는
납세의무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 등
을 수색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영치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
부,서류 등을 영치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영치증(별지 제1호 서식) 및
영치목록(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
하여야 한다.

제21조(장부, 서류 등의 예치)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 서
류 등을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치증(별지 제3호 서식) 및 예치목
록(별지 제4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장부, 서류 등의 예

----- 범위-----
-----.

제19조(조사기간 연장의 제한) -----
----- 기한까지 -----

-----.

제20조(수색, 영치의 금지) ① -----
----- 「조세범 처벌절
차법」에 따르지 -----
----- 포함한다) 시-----

-----.
-----.

② (현행과 같음)

③ ----- 장부,
서류 -----

-----.

제21조(장부, 서류 등의 예치) ① (현
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

-----.

③ ----- 따른 -----

치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조사권행사의 제한과 납세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① 조사대상 납세의무자 및 그와 관련된 자에 대한 조사의 행사는 당해 조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등 조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조사계획) 시장은 업무량과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간 종합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방법, 조사장소 등을 검토하여 조사대상자별 조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26조(조사지휘) ① (생략)

② 조사책임자가 장기간 조사지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조사책임자가 된다.

제27조(조사의 개시 등) ① (생략)

②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반드시 그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7호 서식)를 휴대하고 이를 관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8조(조사보고) ① (생략)

- 범위-----.

제23조(조사권행사의 제한과 납세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① -----

-----해당-----

-- 범위-----.

② -----

-----사람으로-----

-----.

제24조(조사계획) -----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방법, 조사장소 -----

-----.

제26조(조사지휘) ① (현행과 같음)

② -----

-----사람이-----

-----.

제27조(조사의 개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9호 -----

-----.

제28조(조사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사상황을 "조사중간보고서"에 의하여 시장에게 복명한다.

1. 당해 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이 장기간인 때

2. 3. (생략)

제29조(조사진행관리) ① 조사보고을 받은 조사책임자는 앞으로 조사할 사항과 새로운 문제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조사방향을 제시한다.

② 준비조사시 도출된 문제점과 조사책임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은 서면으로 보고한다.

③ 모든 조사적출사항에 대하여는 명확한 증거서류를 확보하여 사전에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여야 한다.

제30조(세무조사 결과통지)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폐업 등 조사결과의 통지가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73조에 따른 납기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3. (생략)

제31조(과세정보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 ① 조사과정에서 파악되는

② -----

-----.

1. 해당 -----

2. 3. (현행과 같음)

제29조(조사진행관리) ① 조사보고를 -----

-----.

② 준비조사 시 -----

-----.

③ -----

----- 소지를 -----.

제30조(세무조사 결과통지) -----

-----시일 내-----

-----.

1. ----- 납기 전 -----

2. 3. (현행과 같음)

제31조(과세정보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 ① -----

각종 과세정보는 “과세자료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세자료 또는 국세와 관련된 자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2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① 시장은 법 제136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증표를 조사 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 등 변동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 하고 파기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은 별표 1로 정한다.

----- 지체 없이-----
-----.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① -

-----발생하
는----- 회수하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
-----.

고 시

포항시 고시 제2016 - 58호

포항 장성침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포항 장성침촌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6.

포 항 시 장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포항 장성침촌지구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주민이 주체가 되어 기반시설의 정비,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대지의 효율증진
- 기성 시가지내 개발가능지의 절대적인 부족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택지의 안정적 공급 도모
-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간 형성 유도 및 쾌적한 주택지를 조성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 도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포항시 북구 장성동 산50번지 일원

나. 면 적

- 393,586㎡

4. 시행자 (변경없음)

- 시행자 : 장성침촌지구 도시개발조합
- 주 소 : 포항시 북구 장성동 1462-13번지(3층)

5. 시행기간 (변경있음)

- 당 초 : 2011. 5. 31 ~ 2016. 5. 30
- 변 경 : 2011. 5. 31 ~ 2020. 5. 30

6. 시행방식 (변경없음)

- 환지방식

7.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 내용 : 변경없음(게재 생략)**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20일간
- 공람장소 : 포항시청 도시계획과

9.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변경없음)

※ 도면 등은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도시계획과
(☎054-270-34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포항시 공고 제 2016 - 776 호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우리시 관내 노상 등에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자동차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및 대체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2016. 05. 30.

포 항 시



1. 공 고 기 간 : 2016. 05. 30. ~ 2016. 06. 30. (30일간)
 2. 폐 차 장 소 : 포항시 관내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체
 3. 폐차 예정일 : 2016. 07. 01. 부터
 4. 대 상 차 량 : 26서8646 외 4대
 5.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 가.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 제85조와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자진처리명령에 응한 경우 20~30만원, 불응한 경우 100~150만원)
 - 나. 범칙금을 미납할 경우 자동차 방치행위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다. 공고기간 내에 소유자 또는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6. 기 타 사 항
 - 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은 본 공고문으로 갈음합니다.
 - 나.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차량 소유자(점유자)에게 있습니다.
 7. 문 의 처 : 포항시청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담당 ☎(054)270-3643
- 붙 임 : 1. 강제처리 대상 1부.
2. 압류 및 저당내역 1부. 끝.

강제처리 대상

관리 번호	자 동 차 등록번호	차 명	소유자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비 고
2016-059	26서8646	옵티마	한*길	510119- *****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평해로	
2016-064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2016-060	25조6644	다이너스티	유*주	651212-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상주길	
2016-061	부산80두1 940	레토나벤	김*	710219- *****	전라남도 고흥군 동면 동양쪽길	
2016-065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압류 및 저당내역

번호	차량번호	차명	소유자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상주소	구분	추락기관	입류(저당)번호	압류(저당)내역
1	25조6644	다이너스티	유*주	651212-*****	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상주길	저당1	성웅캐피탈㈜	2902-2005-001706	2005.05.06.
						압류1	서울서대문구청	교통행정과-3752	이무보험과태료체납
						압류2	인천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967	도로교통법위반(200572302048059)
						압류3	인천 연수구(032-810-7953)	교통행정과-7732	주정차위반과태료(₩40,000)
						압류4	인천광역시남구청(032-880-4205)	세무과-6775	지방세체납
						압류5	광주동부경찰서(062-232-20550)	교통63310-004810	과태료 체납(200671802004510,70000)
						압류6	광주광역시동구청 ☎062-608-2284	세무과-9261	지방세체납
						압류7	광주광역시동구청(300000원]	교통과-20915/06002130	장기감사미결제납
						압류8	국민건강보험공단광주동부지사(062-602-3028)	자격징수부-4025	건강보험료체납
						압류9	광주동부경찰서(062-232-20550)	교통63310-001322	과태료 체납(200671802016982,70000)
						압류10	광주동부경찰서(062-232-20550)	교통63310-001477	과태료 체납(200671802017416,40000)
						압류11	광주광역시동구	교통과-7469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압류2건
						압류12	강서구 ☎02-2657-8771	주차관리과-7411	주정차위반(2006-103554)
						압류13	광주광역시동구청(062-608-2284)	세무과-12520	지방세체납
						압류14	광주동부경찰서(062-233-20560)	교통63310-004490	과태료 체납(200772402003625,40000)
						압류15	광주동부경찰서(062-233-20560)	교통63310-000251	과태료 체납(200772402007516,40000)
						압류16	광주동부경찰서(062-233-20560)	교통63310-000251	과태료 체납(200772402007290,40000)
						압류17	광주동부경찰서(062-233-20560)	교통63310-001175	과태료 체납(200772402008957,40000)
						압류18	광주동부경찰서(062-233-20560)	교통63310-001357	과태료 체납(200772402011474,40000)
						압류19	광주광역시동구청(062-608-2284)	세무과-2171	지방세 체납

압류 및 저당내역

번호	차량번호	차명	소유자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상주소	구분	속탁기관	압류(저당)번호	압류(저당)내역
						압류20	광주동부경찰서(062-233-20560)	교통63310-001544	과태료 제납(200772402012243,40000)
						압류21	서울특별시청 2202-2171-2038	도로행정감관-4458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2006-11-202865,50000)
						압류22	서울시 강서구청 2202-2657-8773	주차관리과-9858	주정차위반과태료(2008-02-111761,40000)
						압류23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관리과 22062-608-2485	환경관리과-16906	장밀검사기간경과*180,000원
						압류24	광주광역시 동구청[300000원]	교통과-22683/08000705	정기검사지연제납
						압류25	광주동부경찰서(062-233-20560)	교통63310-006109	과태료 제납(200872402007342,40000)
						압류26	광주광역시 동구청(062-608-2263)	세무과-11513	자동차세 장기고질체납자량 징수유예 후 부과세
						압류27	광주동부경찰서(062-233-20560)	교통63310-000594	과태료 제납(200872402010661,42000)
						압류28	광주동부경찰서(062-233-20560)	교통63310-002853	과태료 제납(200872402013278)
						압류29	광주동부경찰서(062-233-20560)	교통63310-003936	과태료 제납(200872402014220)
						압류30	서울 강서구	주차관리과-1968	주정차위반과태료(2009-09-106518)
						압류31	강서구	주차관리과-2993	주정차위반과태료(2009-10-100807)
						압류32	광주광역시 동구청(062-608-2284)	세무과-3284	지법세
						압류33	서울시 강서구	주차관리과-5339	주정차위반과태료(2009-11-100208)
						압류34	서대문구	세무과-3584	지법세제납
						압류35	서울시 강서구	주차관리과-8750	주정차위반과태료(2010-01-100836)
						압류36	서울시 강서구	주차관리과-8750	주정차위반과태료(2010-01-101549)
						압류37	광주동부경찰서(062-606-5235)	교통63310-003834	과태료 제납(200972402021079)
						압류38	영등포구	주차문화과-12003	주정차위반과태료(2010-01-101894)
						압류39	영등포구	주차문화과-19417	주정차위반과태료(2010-04-104058)
						압류40	서초구청	주차관리과-21431	주정차위반과태료(2010-04-106397)

압류 및 저장내역

번호	차량번호	지명	소유자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주소	구분	축적기관	압류(저당)번호	압류(저당)내역
						압류41	광주동부경찰서	고통과-008306	과태료체납(240270100077414)
						압류42	서대문구청	현경과-3265	환경개선부담금052(01이8961)
						압류43	고양시 일산동구청(031-8075-6493)	도시미관과-908	주정차위반/2010-08-101290
						압류44	광주동부경찰서(062-606-5235()	고통63310-000000	과태료 체납(240270100100897)
						압류45	서울 은평구[2010-09-103473]	교통지도과-201009	주정차위반과태료
						압류46	서울 영등포구[2010-09-100965]	주거문화과-3355	주정차위반과태료
						압류47	화순경찰서(061-375-7065(354))	생활안전 교통과-000001	과태료 체납(181270100127131)
						압류48	화순군청	재무과-7950	지방세체납
						압류49	화순경찰서(061-375-7065(354))	생활안전 교통과-000001	과태료 체납(181270100144912)
						압류50	광주광역시 동구청	교통과-44522	과태료 체납 일괄(보협, 감사 등)
						압류51	화순경찰서	2012D1812001206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 (181270110105229)
						압류52	고양시 일산동구청	교통안전과-11780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2012-01-101409)
						압류53	화순군청	종합민원과-38975	책임보험미가입에 의한 체납압류 (20121106003310)
						압류54	화순군청	종합민원과-38975	책임보험미가입에 의한 체납압류 (20121106003309)
						압류55	여수시청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52799	주정차위반과태료(2012-10-001139)
2	26사8646	음티마	한*길	510119.*****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평해로	압류1	경상북도 울진군	재무과-19991	지방세 체납
						압류2	울진경찰서	2013D1922001424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 (192270120107474)
						압류3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진영덕지사	징수팀-902518	건강(요양)연금 고용·산재보험, 체납액(건강-990610 인금-0고용-0산재-0)
3	부산80두 1940	레토나네	김*	710219.*****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1가	저당1	상장캐피탈㈜	2601-2002-027455	2002.5.2

압류 및 저당내역

번호	차량번호	차명	소유자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상주소	구분	축타기관	압류(저당)번호	압류(저당)내역
						압류1	울산 남구청장[교통행정과 052-229-9365]	고행91115-12773	주정차위반
						압류2	부산영도경찰서장[051-412-8133]	고통63310-4094	도로교통법위반
						압류3	영도구청장(환경위생과)	환위67100-10050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압류4	부산영도구청	고통91153-10275	주정차위반과태료
						압류5	부산광역시영도구청장	고행91180-12275	책임보험과태료(2002-002960 : ₩300,000)
						가압류6	서울지방법원	2003카단58733	자동차가압류등록(금2,779,080)
						압류7	부산영도경찰서장[051-412-8133]	고통63310-808	도로교통법위반
						압류8	부산영도경찰서장[051-412-8133]	고통63310-1266	도로교통법위반
						압류9	울산남구청장[052-229-9365]	고행91115-11785	주정차위반
						압류10	부산영도경찰서장[051-412-8133]	고통63310-2377	도로교통법위반
						압류11	울산남구청장[052-226-5924]	고행91115-13099	주정차위반
						압류12	부산영도경찰서장[051-412-8133]	경비교통과-374	도로교통법위반
						압류13	부산영도경찰서장[051-412-8133]	경비교통과-2906	도로교통법위반
						압류14	영도구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6505	2004.01기분환경개선부담금체납
						압류15	부산영도경찰서장[051-412-8133]	경비교통과-4090	도로교통법위반
						압류16	부산영도경찰서장[051-412-8133]	경비교통과-6711	도로교통법위반
						압류17	국민건강보험공단부산중부지사장(662-1220)	자격심사부-637	보험료체납
						압류18	부산영도경찰서장[051-412-8133]	경비교통과-343	도로교통법위반
						압류19	영도구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639	2004.02기분환경개선부담금체납
						압류20	부산영도경찰서장[051-412-8133]	경비교통과-2994	도로교통법위반
						압류21	영도구청 교통행정과[179000원]	교통행정-7803/04001317	자동차주세배상보증법위반과태료체납

압류 및 저당내역

번호	차량번호	차명	소유자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상주소	구분	축타기관	압류(저당)번호	압류(저당)내역
						압류22	영도구청 교통행정과[177000원]	교통행정-7803/04002953	사동지순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제납
						압류23	영도구청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9089	책임보험과태료(대체-17더8645)
						압류24	영도구청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8026	05.1기환경개선부담금제납
						압류25	영도구청[300000원]	교통행정과-561/05001662	정기검사제납
						압류26	영도구청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599	2005.2기환경개선부담금제납
						압류27	영도구청 교통행정과[600000원]	교통행정-1988/05005297	책임보험과태료제납
						압류28	영도구청 교통행정과[300000원]	교통행정-1988/05005298	책임보험과태료제납
						압류29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산업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8259	환경개선부담금제납
						압류30	부산 영도구청 3419-4571	교통행정과-91153	주정차위반과태료(부산30누3919)
						압류31	부산서구교통과	교통행정과-18338	주정차위반과태료(부산30누3919)
						압류32	영도구청 세무과	세무과-9360	2006년6월자동차세 제납
						압류33	연제구청	교통행정과-21714	주정차위반과태료
						압류34	연제구청	교통행정과-23537	주정차위반과태료
						압류35	연제구청	교통행정과-23537	주정차위반과태료
						압류36	영도구청 교통행정과	교통-20378	책임보험대체(부산30누3919-321)
						압류37	영도구 환경위생과 051-419-4391	환위-15241	배출가스정밀검사(300,000원)
						압류38	연제구청	교통행정과-1175	주정차위반과태료
						압류39	연제구청	교통행정과-1175	주정차위반과태료
						압류40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산업국 환경위생과	환경관리과-1031	환경개선부담금제납
						압류41	연제구청	교통행정과-3297	주정차위반과태료
						압류42	연제구청	교통행정과-3297	주정차위반과태료

압류 및 저당내역

번호	차량번호	차명	소유자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상주소	구분	축타기관	압류(저당)번호	압류(저당)내역
						압류43	연제구청	교통행정과-3297	주정차위반과태료
						압류44	연제구청	교통행정과-3297	주정차위반과태료
						압류45	연제구청장	교통행정과-3297	주정차위반과태료
						압류46	연제구청	교통행정과-6063	주정차위반과태료
						압류47	연제구청	교통행정과-6063	주정차위반과태료
						압류48	영도구 환경관리과 ☎051-419-4397	환경-5765	배출가스정밀검사위반(부산30누3919대차)
						압류49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생활지원국 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11592	환경개선부담금채납
						압류50	연제구청	교통행정과-23959	주정차위반과태료(2007-44398 40000)
						압류51	고흥경찰서장 ☎061-835-4972	교통63310-4295	도로교통법 위반 2007-008102
						압류52	연제구청	교통행정과-24479	주정차위반과태료(2007-48717 40000)
						압류53	고흥경찰서장 ☎061-835-4972	교통63310-4977	도로교통법 위반 2007-009532
						압류54	연제구청	교통행정과-30844	주정차위반과태료(2007-63648 40000)
						압류55	부산광역시장(051-888-4844)	교통관리과-16592	버스전용차로 위반
						압류56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생활지원국 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311	환경개선부담금채납
						압류57	고흥경찰서장 ☎061-835-4972	교통63310-492	도로교통법 위반 2007-014287
						압류58	연제구청	교통행정과-2160	주정차위반과태료(2008-4780 40000)
						압류5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tel051-749-4571)	교통행정과-17857	주정차위반 (2007-073862W40000 위반일차:2007-10-)
						압류60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생활지원국 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13822	환경개선부담금 채납
						압류61	고흥경찰서 ☎061-835-4972	교통63310-3811	제한속도위반(08-008270)

압류 및 저당내역

번호	차량번호	차명	소유자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상주소	구분	축타기관	입류(저당)번호	입류(저당)내역
						입류62	고흥경찰서 ☎061-835-4972	고통63310-3811	제한속도위반(08-008202)
						입류63	고흥경찰서 ☎061-835-4972	고통63310-3811	제한속도위반(08-008241)
						입류64	대전시동구청(042-250-1118)	고통관리과-29218	주정차위반(0807001343)
						입류65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생활지원국 환경 위생과	환경위생과-2347	환경개선부담금채납
						입류66	부산광역시장(051-888-4844)	고통관리과-5184	버스전용차로위반
						입류67	고흥경찰서	고통63310-982	제한속도위반(08-012955)
						입류68	고흥경찰서	고통63310-1406	과태료채납(08-013558)
						입류69	영도구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20112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부산30누-3919 대체)
						입류70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생활지원국 환경 위생과	환경위생과-21428	환경개선부담금채납
						입류71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통행정과-22249	주정차위반 (2009-025716)
						입류72	부산시장(051-888-4844)	고통관리과-16482	버스전용차로위반
						입류73	고흥경찰서장	고통63310-4297	과태료채납(09-004290)
						입류74	고흥경찰서장	고통63310-4297	과태료채납(09-004292)
						입류7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통행정과-36663	주정차위반 (2009-058756#40000 위반일 자:2009-06-)
						입류76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생활지원국 환경 위생과	환경위생과-1023	환경개선부담금 채납입류
						입류77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생활지원국 환경 위생과	환경위생과-1023	환경개선부담금 채납입류
						입류7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통행정과-16241	주정차위반 (2010-003432)
						입류79	전남고흥경찰서장	고통63310-1578	채납과태료(09-013651)
						입류80	전남고흥경찰서장	고통63310-1578	채납과태료(09-013738)
						입류81	부산광역시영도구	환경위생과-21860	환경개선부담금채납(2010.1기분)

압류 및 저당내역

번호	차량번호	지명	소유자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상주소	구분	축적기관	압류(저당)번호	압류(저당)내역
						압류82	고흥경찰서장	고통63310-5086	제한속도위반(1808-7-0100046939)
						압류83	고흥경찰서장	고통63310-5086	제한속도위반(1808-7-0100050174)
						압류84	고흥경찰서장	고통63310-5086	제한속도위반(1808-7-0100057177)
						압류85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생활지원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39274	환경개선부담금 채납압류
						압류86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통과-52089	주정차위반 (2010-02056240000 ㄹ위반일자:2010-04-10)
						압류87	고흥경찰서(061-830-0337)	고통63310-000133	과태료 채납(180870100104231)
						압류88	진남고흥경찰서장	경비교통과-	제한속도위반(180870100034380)
						압류89	영도구청세무과	세무과-8925	세외수입채납
						압류90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생활지원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18157	환경개선부담금 채납압류
						압류91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생활지원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42479	환경개선부담금 채납압류
						압류92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생활지원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21816	환경개선부담금 채납압류
						압류93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5024	채납과태료(597,000원)
						압류94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생활지원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43136	환경개선부담금 채납압류
						압류95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생활지원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16305	환경개선부담금 채납압류
						압류96	부산광역시 서구	건축과-7834	도로공간사용료 채납압류
						압류97	국민건강보험공단 고흥보성지사	징수팀-902265	건강(요양)연금,고용,산재보험,채납액(건강:201970인금:0고용:0산재:0)
						압류98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생활지원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36383	환경개선부담금 채납압류
						압류99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생활지원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17609	환경개선부담금 채납압류
						압류100	고흥군청	건설과-38327	채입보험 채납에 따른 압류등록(20140526000726)

압류 및 저당내역

번호	지량번호	차명	소유자명	주민등록번호	지량등록상주소	구분	축적기관	압류(저당)번호	압류(저당)내역
						압류101	고흥군청	건설과-38327	책임보험 채납에 따른 압류등록 (20140526000727)
						압류102	영도구청 교통과	교통과- 11279(2014.9.22)	자동차 종합검사 과태료 채납(20140211000032)
						압류103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생활지원국 환경 위생과	환경위생과-19143	환경개선부담금 채납압류
						압류104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생활지원국 환경 위생과	환경위생과-20116	환경개선부담금 채납압류
						압류105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생활지원국 환경 위생과	환경위생과-39631	환경개선부담금 채납압류

포항시 공고 제 2016 - 801 호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우리시 관내 노상 등에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자동차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및 대체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2016. 06. 03.

포 항 시 장



1. 공 고 기 간 : 2016. 06. 03. ~ 2016. 07. 03. (30일간)
 2. 폐 차 장 소 : 포항시 관내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체
 3. 폐차 예정일 : 2016. 07. 04. 부터
 4. 대 상 차 량 : 60마3490 외 4대
 5.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 가.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 제85조와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자진처리명령에 응한 경우 20~30만원, 불응한 경우 100~150만원)
 - 나. 범칙금을 미납할 경우 자동차 방치행위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다. 공고기간 내에 소유자 또는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6. 기 타 사 항
 - 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은 본 공고문으로 갈음합니다.
 - 나.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차량 소유자(점유자)에게 있습니다.
 7. 문 의 처 : 포항시청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담당 ☎(054)270-3643
- 붙 임 : 1. 강제처리 대상 1부.
2. 압류 및 저당내역 1부. 끝.

강제처리 대상

관리 번호	자 동 차 등록번호	차 명	소유자	주민(법인)등록 번호	주 소	비 고
2016-056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상	
2016-057	60마3490	카니발	박*남	590625-*****	경기도 시흥시 삼미시장3길	

압류 및 저당내역

번호	차량번호	차명	소유자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상주소	구분	속탁기관	압류(저당)번호	압류(저당)내역	보관장소
1	60다3490	카니발	박*남	590625-*****	경기도 시흥시 삼미시 장3길	압류1	경기도 시흥시	세정과-28859	지방세 체납(031-310-3501,3502)	신태평양폐차장
						압류2	경기도 시흥시	세정과-7043	지방세체납 (031-310-3501,3502)	신태평양폐차장
						압류3	경기 김포시	교통행정과-18026	추정지위반과태료(2012-10-101199)	신태평양폐차장
						압류4	시흥시환경정체과(031-310-5977)	환경정책과-16426	환경개선부담금체납	신태평양폐차장
						압류5	경기도 시흥시	세정과-22401	지방세 체납(031-310-3501,3502)	신태평양폐차장
						압류6	시흥시차량등록사업소(031-310-5168)	차량등록-25790	책임보험과태료(20130429009412)	신태평양폐차장
						압류7	시흥시차량등록사업소(031-310-5168)	차량등록-25790	책임보험과태료(20130429009413)	신태평양폐차장
						압류8	시흥시환경정체과(031-310-5977)	환경정책과-38951	환경개선부담금체납	신태평양폐차장
						압류9	시흥경찰서	2014D1335003088	과태료 체납지문에 의한 압류등록 (1335570130906372)	신태평양폐차장
						압류10	시흥시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 14102	종합검사 지연과태료(20131223006543)	신태평양폐차장
						압류11	시흥시환경정체과(031-310-5977)	환경정책과-17744	환경개선부담금체납	신태평양폐차장
						압류12	경기도 화성시	대중교통과-36105	추정지위반 (2014-009903 ₩)	신태평양폐차장
						압류13	경기도 시흥시	세정과-4134	지방세 체납(031-310-3501,3502)	신태평양폐차장
						압류14	시흥시환경정체과(031-310-5977)	환경정책과-18616	환경개선부담금체납	신태평양폐차장
						압류15	경기도 시흥시	세정과-9191	60다3490 지방세 체납	신태평양폐차장
						압류16	시흥시환경정체과(031-310-5977)	환경정책과-16328	환경개선부담금체납	신태평양폐차장
						압류17	시흥시 환경정체과(031-310-5977)	환경정책과-37161	환경개선부담금체납	신태평양폐차장
						압류18	경기도 시흥시	세정과-3716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031-310-3501,3502)	신태평양폐차장

포항시의회 공고 제5호

제230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포항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
조의 규정에 따라 제230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
례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일시: 2016년 6월 10일(금요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포항시의회 본회의장

2016년 6월 일

포항시의회의장 이 칠 구